

「세대공유 캠퍼스 조성사업」 설계공모 질의답변

1. 구조 및 내진보강 관련

구분	질의내용	답변내용
1. 구조, 및 내진보강 관련	1. 내력벽·비내력벽 구분 기준, 구조도면 제공 가능 여부, 구조변경 허용 범위 등 ◦ 기존 구조도면 제공 가능한지? 특히 나눔센터의 내력벽·비내력벽 구분 가능한 자료 제공 여부 ◦ 조적, 내력벽, 비내력벽 구조에 대한 구조도면 요청 ◦ 구조도면 및 구조계획서 제공 가능 여부 ◦ 3개동 구조변경이 불가하다는 지침서 내용 관련, 제공도면의 내력벽과 비내력벽 구분 기준은? 구조도면 첨부 요청 ex. 내력벽: A-CON, A-WAL1 비내력벽: A-ELE1(가벽), A-WAL2(비내력벽), A-WAL3(비내력벽) ◦ 나눔센터 구조변경 불가라 함은 내력벽은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인지? 또한, 외부(입면) 조정도 불가능하다는 의미인지? ◦ P29 나.나눔센터 ※본 건축물은 구조변경은 불가함 → 나눔센터 건물만 구조변경이 불가한 이유, 구조보강을 통한 변경 또한 불가한지? ◦ 내진보강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요하는 구조변경의 기준 필요. (보 철거 가능유무, 외벽 일부 철거 가능유무) ◦ P31 ‘승강기 증축 해당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은 대수선을 지양한다.’ 라는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채움센터와 나눔센터 대수선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도면 재첨부[첨부 2] 내력벽, 비내력벽 레이어 구분 ◦ 구조도면 및 구조계획서 제공 불가 ◦ 나눔센터는 대수선 불가 (벽식구조이므로 구조변경 불가) ◦ 채움센터는 예정공사비 내에서 대수선 가능 과도한 해체 등은 지양
	2. 내진보강 과업 관련 ◦ P22 '채움센터, 돛움센터는 내진보강 포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 채움센터는 별도 내진성능평가 진행 중으로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과 내진성능 평가가 진행되었는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전체 예정 공사비에 포함되는 부분인지? ◦ 구조안전진단 자료 요청 드립니다. 없으면 설계과업에 포함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존 건물의 내진 성능 확인 요청) ◦ P21 해당 총예정공사비 금액에 두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공사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제공 가능여부 ◦ P21 해당 설계비 금액에 두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설계용역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제공 가능여부 ◦ 채움센터의 내진보강은 대수선 없이 내진보강을 하는 건지 ? ◦ 내진보강 계획의 공모단계 제안범위: 채움센터와 돌움센터의 내진보강과 관련하여, 공모단계에서 구체적인 보강 위치·방식까지 제시하여야 하는지, 또는 구조계획의 기본방향만 제시하여도 되는지	실시설계 시 제공 예정 ◦ 채움센터, 돌움센터 내진보강 공사비 및 설계비는 전체 예정 공사비 및 설계비에 포함되어 있음 ◦ 채움센터는 예정공사비 내에서 대수선 가능 과도한 해체 등은 지양 ◦ 공모 단계에서는 구조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주어진 조건 및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공모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간계획을 제안하기 바람.
--	--	---

2. 면적 기준 및 구적도 관련

구분	질의내용	답변내용
2. 면적 기준 및 구적도 관련	1. 리모델링 사업 연면적 -5% 조정 적용 관련 ◦ 2P 및 22P에 명시된 리모델링 사업면적(-5% 범위 내 조정 가능)의 적용 기준이 각 동별 연면적 -5% 조정 적용 기준이 각 건물별 적용인지 전체 연면적 합산 기준인지? ◦ 리모델링 사업면적 조정 범위 관련 : 지침서 22p에 '리모델링 사업면적은	◦ 연면적 조정가능 범위는 각 건축물별로 -5% 가능

	7,906.43에서 리모델링으로 -5% 범위 내 조정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장설명회에서 건축물 대장상 면적을 기준으로 -5% 범위 내 조정이 가능 말씀해주셨는데, 각 건물별로 -5%를 의미하는건지?	
	2. 건축물대장 수치 vs CAD 면적 차이 적용 기준, 면적산출 공통기준 면적선 제공 가능 여부 ◦ 건축물대장 면적과 CAD 도면상 구적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어떤 면적을 기준으로 설계 및 구적도를 작성해야 하는지? ◦ 각 시설별 건축물대장상 건축면적과 CAD상 건축면적이 상이한데, 건축물대장상 수치로 개요 작성하면 되는지? ◦ 지침의 면적은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으로 캐드상 면적과 상이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있는데, 대장상 면적을 기준으로 제공도면(CAD)을 수정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제공도면(CAD)의 면적을 기준으로 대장상의 면적을 맞춰야 하는 부분인가요? 제출도서에 구적도(CAD)가 포함되어 있어 어떤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면적 산출의 공통 기준이 되는 면적중심선 도면(CAD) 제공 여부 ◦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제공된 캐드상 면적이 상이함에 따라 공통 기준이 될 면적선 제공 가능 여부 ◦ 채움센터 사업면적 관련 : 지침서상에 6,136.76㎡로 주어졌는데, 캐드상 면적이 약 6,363.75㎡로 220㎡가량 차이가 있어보임. 추가로 제외되는 공간이 있는지?	◦ CAD상 건축면적으로 작성 ◦ 제공 캐드도면(면적표시) 참조[첨부 2] - 채움센터: 6,136.76㎡ → 6,323.28㎡ - 나눔센터: 606.51㎡ → 583.59㎡ - 돌음센터: 1,163.16㎡ → 1,180.77㎡ 리모델링 사업면적 7,906.43 → 8,087.64㎡
	3. 공모제외면적 관련 수치 확인 ◦ 채움센터의 공모제외면적은 제공된 CAD의 빗금 친 부분인 지하1층의 904.17㎡과 지상2~4층의 EV면적 5.76㎡을 더한 921.45㎡이 맞는지 ?	◦ 제공 캐드도면(면적표시) 참조[첨부 2]

	◦ 채움센터) 제공된 CAD의 공모제외면적 921.45㎡와 지침상의 공모제외면적 1,169.07㎡(7,305.83㎡-6,136.76㎡)이 상이한데, 면적과 상관없이 CAD의 빗금친 부분(공모제외 영역), 빗금 외 부분(리모델링 영역)으로 이해하고, 구적도상 면적을 건축물 대장상 면적의 -5%범위 내에서 조정하면 되는지? ◦ 돌움센터의 공모제외면적은 제공된 CAD의 빗금 친 부분인 지하1층의 175.56㎡이 맞는지? ◦ 돌움센터) 제공된 CAD의 공모제외면적 175.56㎡과 지침상의 공모제외면적 179.55㎡(1,342.71㎡-1,163.16㎡)이 상이한데, 면적과 상관없이 CAD의 빗금친 부분(공모제외 영역), 빗금 외 부분(리모델링 영역)으로 이해하고, 구적도상 면적을 건축물 대장상 면적의 -5%범위 내에서 조정하면 되는지? ◦ P.26 프로그램별 면적표 채움센터- ‘에이스테크 실증거점, 디지털 배움터, 전시라운지 : 1층 별도의 공간에 계획’ 하라고 되어 있는데, 1층이라 함은 진입층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 제공 캐드도면(영역부분표시) 참조[첨부 2]
	4. 제출도서 목록상 '구적도' 작성 기준, 구적도 제공 요청 ◦ P9 제출도서 목록 중 '구적도'는 어떤 종류의 구적도를 의미하는지. 만약 실별 면적에 대한 구적도를 제출해야 한다면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이 정리된 도면이 필요 (건축물 대장과 현재 도면의 면적이 맞지 않아 제척된 면적이 어딘지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모두에게 기준이 될 수 있는 구적도 제공 요청	◦ 구적도는 제출도서에 미포함(정정) ◦ 도면 재첨부[첨부 2]
	5. 실별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비율(30%) 조정 ◦ P26~P28에 제시된 각 센터별 실별 면적표의 면적이 최소 기준인지, ±5% 범위 내 조정이 가능한 권장 기준인지? ◦ 제공된 프로그램별 면적표를 적용하면서 공용면적 30% 이상 확보하기에는 우리가 있으므로 전용면적에 대해 조절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ex : 실별 전용면적 ±5%)	◦ 제시된 면적 최소 기준은 준수하고, 공간계획에 따라 제안면적은 자유롭게 조정 가능 ◦ 전용면적 최소 기준 우선적용, 공용면적 비율 30%는 권장 사항.

	◦ 공용면적 비율 30% 권장 기준(지침서 32P)과 전용면적 최소 기준이 상충하는 경우 적용 우선순위 문의 ◦ 지침서 P32 공용면적 확보 권장 비율(30%)과 세부 프로그램 면적표 수치 간 불일치 시 조정 기준 P32 “전체 사업면적의 30% 이상을 공용면적으로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와 주어진 면적표상 공용면적이 상충(30% 미만)하는 것에 대한 검토 ◦ P32 나.평면계획 4)에서 “전체 사업면적의 30%이상을 공용면적으로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고 명시되어 있지만 채움센터 프로그램 면적표(26p)의 경우 전용면적의 최소기준이 4,800m² 로 되어있어 공용면적비율이 약 20%로 제한됩니다. 만남, 운동, 문화집회, 배움 프로그램의 최소면적 기준만 준수하고 전체 전용면적 기준(4,800m² 이상)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P26 : 1)채움센터 - 면적 00㎡이상 ※상기 권장(제안)된 세부시설 공간과 면적은 조정가능하며... → 면적표상에 ~이상으로 되어있는 바 실별 면적을 제안면적 이상으로 확보해야하는지, 제안면적보다 작게도 조정 가능한지? ◦ 면적표에 제안하라는 실이 많은데, 사전기획을 통해 면적이 정해졌을텐데 제안하라는 이유가 있는지?	◦ 만남의 공간 및 각 시설의 휴게공간을 공용 면적에 포함 가능 ◦ 전용면적 최소 기준 우선적용, 공용면적 비율 30%는 권장 사항 ◦ 제시된 면적 최소 기준은 준수하고, 공간계획에 따라 제안면적은 자유롭게 조정 가능 ◦ 설계공모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간의 활용성과 운영방식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및 공간 구성을 추가 제안받고자 함
--	---	--

3. 공모 대상 범위 및 현황·도면 불일치 관련

구분	질의내용	답변내용
3. 공모 대상 범위 및 현황·도면 불일치 관련	1. 도면상 '공모제외(빗금)' 영역 제안 가능 여부 ◦ 제공도면상 공모제외 면적으로 표기된 부분은 계획제안이 불가한지? ◦ 제공도면에서 공모제외 표기 부분은 이번 설계공모 범위에 미포함 되는 것인지?	◦ 공모 제외면적은 제안 불가 ◦ 공모 제외면적은 공모 범위에 미포함

	2. 현장 현황 및 도면 불일치/최신 도면 배포 요청 ◦ 제공자료의 도면과 현황의 개구부 위치 등 차이가 있는데 최신 도면의 제공이 가능한지? ◦ 채움센터 지하1층 평면도에 VOID공간(x1~x4열, y1~y4열)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VOID 공간의 위치와 범위, 현재 사용 용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채움센터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 지하1-2층 평면과 단면도(예비실)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 현장(현장사진 및 현황)과 제공도면이 불일치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현장 기준으로 도면을 계획해야하는지 아니면 제공도면 기준으로 계획해야 하는지? ex) 채움센터 : 지하1층 X4~6열,Y1~2열 구간: 창호 및 문, 셔터 누락, 기계실 벽체 구획 불확실(면적산정 불분명 및 공간 계획시 동선 및 조닝 관련사항) / 지상1층 X10, Y10~12열 구간: 실 누락(제공자료 중 현장사진 : 채움센터-1층 복도 끝 외부공간3(창고) 참고) / 지상2층 X10, Y10~12열 구간: 외부공간 및 계단 누락 등 ◦ 채움센터(현 학생관)의 지하2층 종단면도(가로 단면선)와 평면도가 불일치한데(단면도는 B2~B1' 까지 예비실이며, 평면도에서는 지하2층이 연구실로 구성), 지하2층에 대한 실 구성을 단면도를 기준으로 지하2층 평면도의 연구실들이 아닌 예비실로 보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도면 불일치 및 기존 슬라브 관련으로 질의) ◦ 채움센터(학생관) 대장상 층별 구분이 지하1층부터 옥탑층으로 총 6개층이 있는데, 제공도면은 지하2층부터 지상4층으로 총 7개층으로 평면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층별 구분을 대장 기준으로 지하1층으로 계획해야할지 아니면 제공도면 기준으로 지하2층으로 계획해야할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또, 대장에 기재되어있는 옥탑층의 물탱크실 면적 산정에 관해 제공도면에	◦ 도면 재첨부[첨부 2]
--	--	--

	옥탑층 평면도가 기재되어 있지않아 면적산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움센터 옥탑층에 관한 도면 제공 요청드립니다.	
	3. 특정 층·공간(지하 2층, 성당, 경비실)의 과업 포함 여부 ◦ 채움센터 지하2층 및 공모대상 범위: 지침에는 채움센터를 지하1층~지상4층으로 제시하나 현황도면에는 지하2층이 확인됨. 지하2층의 공모범위 포함 여부 및 정확한 층별 계획범위를 확인 바람 ◦ 돈움센터 3층 단면도상 확인되는 성당과 평면도상 X2~X3, Y4~Y5 영역(건축물대장 미포함분)이 계획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 바람 ◦ 경비실 도면이 첨부되어 있는데 공모 대상 범위에 포함 여부 ◦ 공모개요의 채움센터의 층수는 지하1층~지상4층으로 안내되는데, 현재 존재하는 지하2층은 공모제외면적으로 보는 것인지? ◦ 돈움센터 사업면적 관련 : 3층 성당부분(70㎡)이 사업면적(1,163.16㎡) 포함된건지 확인이 필요하며, 성당 전실 공간 (평면 X2-3열 / Y4열 공간 34.7㎡)이 실외 공간을 실내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면적도 사업면적(1,163.16㎡)에 포함된건지? 위 면적의 포함 여부에 따라 지침서에 작성된 -5% 면적의 기준이 필요	◦ 도면 재첨부[첨부 2] ◦ 공모 범위에 포함 성당 부분은 다락으로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공간계획은 제안 가능) ◦ 공모 범위에 미포함. ◦ 지하2층~지상4층이며 공모 제외면적은 빗금으로 표시. ◦ 공모 범위에 포함

4. 외부공간, 마스터플랜 및 주차·동선 관련

구분	질의내용	답변내용
4. 외부공간, 마스터플랜 및	1. 외부공간 활용 영역 외 추가 제안 및 시설물 설치 ◦ 외부공간 계획 가능범위: 배치도 상 “외부공간 활용” 표시 범위 외에 바닥포장, 조경 등 외부공간 계획이 가능한지 확인 바랍니다.	◦ 외부공간 활용가능 범위 외 부분은 공모 범위에 미포함

주차·동선 관련	또한 기존 주차구획의 일부 조정 혹은 추가가 가능한지 ◦ 제공도면 배치도 : 외부공간활용 영역으로 표시된 영역 외에 새로운 조경 계획 제안이 가능한지? ◦ 외부공간 계획 시 회랑, 캐노피 등의 설치도 가능한가요? ◦ 외부공간활용 영역에 건축적 행위가 가능한지? ◦ 외부공간 계획범위 관련 : 외부공간계획은 배치도상의 외부공간활용 범위로 한정해야 하는지? 또는 추가적인 제안이 가능한지? ◦ 나눔센터 외부공간영역의 경우 공방 연계, 전시라는 목적이 확실한데, 채움센터 외부공간영역의 경우 건물과 3.5~4m 정도 떨어진 별도의 공간인데 어떤 목적을 의도하고 영역을 설정하였는지? 건물과 연결할 수 있는 계단 및 경사로 설치가 가능한지? ◦ 조경계획관련 : 기존수목은 이식 및 추가 식재 가능한지?	◦ 주차구획 조정은 가능하나, 주차계획은 본 공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필수사항은 아님 ◦ 외부공간 활용가능 범위 외 부분은 공모 범위에 미포함. ◦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랑, 캐노피 등의 설치나 파고라, 벤치 등 조경시설물 설치하는 가능하나, 일반 건축물의 건축은 불가함 ◦ 외부공간 활용가능 범위 외 부분은 공모 범위에 미포함 ◦ 도면 재첨부 외부공간 범위 수정 ◦ 건물과 연결 할 수 있는 계단 및 경사로 설치하는 가능 ◦ 기존 수목 이식 및 추가 식재 가능
	2. 주차 계획, 현황 개요 및 대지 경계 ◦ 기존 캠퍼스 마스터플랜 자료 제공 여부: 제공된 배치도 외 신학대학(하하센터) 전체가 포함된 CAD 자료의 추가 제공이 가능한지? ◦ P34 : 사. 주차계획... 기존 캠퍼스의 주차 및 차량동선계획을 참고하여 외부공간 계획 →전체 캠퍼스 마스터플랜 도면 제공여부, 주차관련 개요 제공여부 ◦ 기존 캠퍼스 주차개요 및 세부사항 요청 ◦ 기존 캠퍼스 주차계획도 요청 ◦ 요구되는 주차대수(장애인주차포함) ◦ 대지경계선 기준 확인 질의 : 제공된 CAD 도면상에 명확한 '대지경계선' 구획이 없고 '지적선'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필지구획이 어떻게 되는지?	◦ CAD자료 없음 ◦ 자료 재첨부[첨부 3] 캠퍼스 주차 현황(계획) ◦ 주차현황 참조[첨부 3] ◦ 주차현황 참조[첨부 3] ◦ 제한 없음 ◦ 대지경계선은 제안서에서 표시 제외

	3. 시설간의 동선, 진출입구 및 지형 레벨 등 ◦ 대지 상세 레벨 관련 : 경사지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공간의 상세레벨 제공이 가능한지? ◦ 추가 자료 요청 : 대지 및 건축물 진입부와 주변 레벨값 확인이 가능한 지형도 혹은 현황측량자료와 기존 건축물 구조도가 있는지? ◦ 2P7 2)나눔센터 ※유니버설 디자인 접목,... → 나눔센터의 경우 엘리베이터 없이 2층으로 접근이 어려운데 추가 램프를 설치해야하는지? ◦ P14 심사평가 항목표 중 ‘배치계획-시설 간의 동선 연결 : 시설 간의 동선 연결을 위한 외부공간 정비 제안이 가능한지? ◦ P31 가.배치계획-5) 보행자와 방문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열린 진입마당을 조성하여 공공성을 확보 : 건물 주출입구 진입마당 인지성 확보를 위한 조경 계획(도로→보행마당)이 가능한지? ◦ 대지 진출입구 관련 : 대지 주출입구, 부출입구에 대한 운영 계획 지침 필요함 ◦ 현재 캠퍼스 후문의 용도와 이번 공모 계획 시 출입구로 사용 가능한지	◦ 자료 제공 불가 ◦ 자료 제공 불가 ◦ 나눔센터는 승강기 설치가 불가하므로 수직 이동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접목은 어려우며, 방문객 동선에 맞춰 각종 프로그램 배치 필요 ◦ 시설간의 동선연결은 안내간판 등으로 하며 외부공간 정비는 정해진 구간만 가능 ◦ 도면 재첨부[첨부 2] 외부공간 범위 수정 ◦ 부출입구(후문) 운영계획은 학교측과 협의중으로 본 공모에는 주출입구에 대한 진출입으로만 계획 권장
--	---	--

5. 제출도서 및 심사 관련

구분	질의내용	답변내용
5. 제출도서 및 심사 관련	1. 제출 도서 작성 형식 및 규격 ◦ P10 설계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인 ①~⑱의 순서를 반드시 해당 순번인 순서대로 설명서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 별첨 제1호 설계설명서 표지의 날짜는 제출일로 표기하면 되는지	◦ 자유롭게 구성 ◦ 제출일로 표기
	2. 조감도 및 투시도 컷수, 입면도와 단면도 면수 작성 기준 ◦ P9에 각 동별 3컷이내 외에 투시도 컷수가 지정 되어있지 않음. 전체 컷수는 자율인지? ◦ “조감도 및 투시도 각 동별 3컷 이내”와 관련하여, 전체 9컷 이내에서 동별 컷수를 조정할 수 있는지? 또한 3개 동이 함께 표현된 캠퍼스 조감도의 컷수 산정기준은? ◦ P9 각 동별 입면도와 단면도를 합하여 2면 이상(총 6면 이상)을 의미하는지, 혹은 각 동별 입면도 2면, 단면도 2면 이상(총 12면 이상)을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 동별 2컷 이상, 전체 9컷 이내 ◦ 동별 입면도 2면, 단면도 2면 이상
	3. 심사 일정, 발표 방식 등 행정사항 ◦ 1차 심사 공개 시기 및 방식: 1차 심사가 심사 당일 실시간 중계되는지 또는 2차 심사 종료 후 공개되는지? ◦ 2차 온라인 발표 시 발표자 공개 여부: 2차 온라인 발표 시 발표자의 영상(얼굴)이 심사위원 및 일반 시청자에게 공개되는지, 또는 설계설명서 화면	◦ 1차 심사는 유튜브 실시간 중계되며, 별도 결과 공지는 없음. 2차 발표심사 대상자에게 1차 심사 당일 22시까지 개별 유선 통지 ◦ 설계설명서 화면과 음성만 공개

	과 음성만 공개되는지 ?	
--	---------------	--

6. 증축, 지붕, 설비 및 소방 관련

구분	질의내용	답변내용
6. 증축, 지붕, 설비 및 소방 관련	1. 건물 증축 범위 및 승강기 계획 ◦ P2 리모델링으로 -5% 범위 내 조정 가능 → 사업 연면적 내에서 수평수직증축 가능한지?(EX. 현재 건물 외부에 추가 증축 등) ◦ P28 돔옴센터 전용면적 추가 제안 가능한 부분은 증축이 가능하다고 보는건지? ◦ P28 허인백야고보관에 설치될 승강기는 외부 또는 내부 설치지침 제공 필요함. ◦ P28 돔옴센터 엘리베이터 관한 질의 : 엘리베이터의 정해진 규격이 있는지? 또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로 설치해야 하는지? ◦ P28 기존 상담실 위치에만 승강기를 증축해야 하는지 질의하며, 계획안에 따라 기존 상담실 외 다른 위치에 증축이 가능한지?	◦ 증축 불가 ◦ 승강기 설치 위치는 제안 가능 ◦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필요
	2. 지붕 방수 · 교체 범위 및 형태 변형 ◦ P32 라.입면계획 7)에서 노후화되어 방수 및 교체가 필요한 지붕의 위치와 범위가 어디인지, 지붕의 형태 변형도 가능한지? ◦ P32 지붕 방수 및 교체 대상 범위가 3개 동 전체인지, 일부 동에 한정되는지?	◦ 지붕의 범위는 3개동 전체이며, 사업비 가능 범위에서 형태 변경 가능
	3. 설비, 소방, 기계실 및 전기실, 신재생에너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질의 : 2000년 준공 대상지의 리모델링 시 현행 소방법에 따른 스프링클러 전면 신설이 예상됩니다. 기존 소화펌프 및 소화수조에 대한 제원을 제공 부탁 ◦ 설비도면 제공 가능 여부	◦ 자료 첨부(채움센터)[첨부 4] ◦ 나눔센터, 돔옴센터는 소방설비 없음. ◦ 설비도면 제공 불가

	◦ 각 동(나눔센터, 돈옴센터) 별 기계실 및 전기실 계획 필요한지? ◦ 제로에너지 설계 대상은 아니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여부 확인 부탁	◦ 필요없음 ◦ 해당없음
--	--	--

7. 시설별 세부 기능 및 공간 운영 관련

구분	질의내용	답변내용
7. 시설별 세부 기능 및 공간 운영 관련	1. 시설별 공간 유지/철거 및 실 변경 기준 ◦ p26 채움센터의 공연장의 위치를 ‘2층 현재 공연장 위치에 계획’ 의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제공도면 지상2층에는 공연장이라는 실을 찾아볼 수 없어 질의드립니다. 제공도면 지상2층의 회중석에 공연장을 계획하라는 의미인가요? ◦ P23 : 채움센터 2층 내부공연장 전경(일부시설 유지 필요) → 지침에서 말하는 일부 시설이 무엇인지? ◦ 채움센터 공용화장실(각층 2개소씩) 관련 : 채움센터는 공용화장실을 각 층당 2개소씩 계획하라고 제시되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제공도면을 봤을 때, 지하2층(제공도면상 기존 실이 연구실 공간인 경우)과 지하1' 층은 한 층당 면적 대비 화장실이 2개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으로 질의. 지침에 따라 화장실이 2개소가 나오려면 X1~4열 구간 화장실 1개소와 X5~10열 구간 화장실 1개소로 계획되어야 하는지(수직으로 동선이 분리된동에 각각 화장실 1개소 배치) 아니면 X5~10열 구간에 화장실 2개소를 계획해도 되는지에 대해 질의 ◦ 나눔센터 공용화장실(각층 기존 욕실 위치 유지) → 현재 나눔센터 내 욕실	◦ 도면 재첨부(무대 포함)[첨부 2] 회중석이 공연장임 ◦ 외부 디자인과 연계되는 공연장 내부의 벽돌 및 천장 목재 마감 등 기존 시설의 특성과 흔적을 나타내는 요소는 가급적 유지할 것을 권장 ◦ 층별 공용화장실 2개소는 남·여 각 1개소를 의미하며, 세부 배치는 계획되는 프로그램 및 공간구성에 따라 자유롭게 제안 가능 ◦ 변경 가능

	3개실 전부 유지해야하는지, 위치 외 면적 변경 가능한지?	
	◦ 나눔센터는 공용화장실을 각 층의 기존 욕실 위치에 유지하여 계획하라고 제시되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제공도면에서 지상1층에서 욕실 1개, 지상2층에서 욕실 2개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해당 층들의 욕실들의 위치를 고정하여 지상1층에는 화장실 1개소, 지상2층은 화장실 2개소로 전층 공용화장실이 3개소로 계획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상1층 화장실은 기존 욕실 자리에 계획하고 지상2층 화장실은 기존 욕실 2곳 중 1곳으로 화장실을 통합하여 계획하여도 되는지에 대해 질의 2. 실별 상세 세부 지침 및 실별 통합·분리 가능 여부 ◦ P26 채움센터) 다목적강당(520㎡이상), 공연장(550㎡이상) 각 실별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와 운영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는지? ◦ P26 채움센터) 어린이 놀이공간 이용자의 나이는? (유아, 영아 포함인지), 식당 운영계획 (덤웨이터 필요유무 등) ◦ P26 채움센터 면적표 중 ‘참고(강의실용)’ 항목이 두개인데, 하나가 ‘참고(연습실용)’ 이 맞는 것인지? ◦ P26 채움센터 연습실 및 강의실 운영 프로그램: 채움센터 연습실 및 강의실의 예정 프로그램 또는 운영계획 자료 제공이 가능한지? 별도 계획이 없는 경우 수용인원 기준 내에서 프로그램을 자율 제안할 수 있는지? ◦ P28 돛움센터) 건강디지털 면적 제안 시 실 통합 및 분리 가능한지. 최소 면적 있는지? (예상 사용 인원수 등 고지 부탁드립니다.) ◦ 운영시간은 모든 실이 동일하게 9-6인지?	◦ 변경 가능 ◦ 다목적강당은 일반 강당 행사와 실내체육활동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고, 공연장은 공연, 세미나 등 개최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 예정임 ◦ 영유아 대상임 덤웨이터는 계획안에 따라 구성 가능 ◦ 오기 정정 참고(강의실용)/ 참고(연습실용) ◦ 제안 가능 ◦ 제안 가능 ◦ 캠퍼스 전체 운영시간은 동일함
	3. 스포츠/특화 시설 기준 (스크린파크골프) ◦ P28 돛움센터에서 스크린파크골프장(제안)의 연습용 타석이 반드시 10타석	◦ 10타석 내외로 계획 가능

	으로 준수해야하는지 ◦ 돛움센터의 스크린골프장은 제시된 규격(3x7m)를 10개소 이상 계획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	---	--

8. 공사비 및 내역서 산출 관련

구분	질의내용	답변내용
8. 공사비 및 내역서 산출 관련	1. 예정공사비 수치 불일치 및 공사비내역서 작성 기준 ◦ 지침서 22p에 총 예정 공사비는 205.98억원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지침서 24p 시설현황 각 시설별로 제시된 공사비를 합산할 경우 204.9억원으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개략 공사비 산정 시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 개략공사비 내역서 작성 시 채움센터, 나눔센터, 돛움센터의 공사비를 합산하여 작성하는 것인지,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하는지?	◦ 전체 예정공사비 총공사비 205.98억 범위 내에서 계획안에 따라 산정
	2. 시설 내부 철거 및 재시공 범위 지침 해석 ◦ 시설 내부 철거 및 재시공 범위 관련 : 지침서 24p 각 시설별 현황 설명에서 하단에 '내부는 필요 부분 철거 후 재시공 되어야하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구를 필요에 따라 전면 또는 부분철거 후 재시공이 가능하다는 의미 인건지, 또는 기존 시설의 철거 및 재시공에 별도 제한 또는 고려사항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철거된 부분을 추후 복구해야한다는 의미 인건지 추가적인 설명이나, 작성해주신 의도 문의	◦ 전체 철거없이 계획안에 따라 부분철거 후 재계획을 의미

9. 기타

구분	질의내용	답변내용
----	------	------

9. 기타	◦ P28 돌웁센터에서 건강증진센터-건강상담실 내 승강기 증축으로 인한 기존 상담실을 철거 예정이라는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제공도면상 기존 상담실 위치 표기가 되어있지 않아 도면에서 상담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해 질의	◦ 도면 재첨부[첨부 2] 돌웁센터의 상담실 위치 표기
	◦ 추가 현장조사 가능 여부	◦ 학교 특성상 추가 내부 조사는 어려우며, 필요 시 외부 현장 조사에 한해 가능